

# 이해상충관리지침

이아이피자산운용(주)

# 이해상충관리지침

제정 2021. 06. 10.

##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44조 및 제 249조의3 제2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271조의 2 제9항에 따라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기본원칙

### 제2조(투자자이익 우선의 원칙)

- ① 투자자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이해상충 문제의 속지 및 차단)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절 이해상충의 관리 절차

### 제4조(이해상충문제의 파악·평가·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 1. 서면
  - 2. 전화·전신·모사전송

- 3. 전자우편
  - 4. 그 밖에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
- ③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 ①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회사 및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와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회사의 고유재산운용과 집합투자기구 운용 간의 이해상충
    - 나. 집합투자기구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 라. 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투자와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 마.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간의 이해상충
  - 2.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 3. 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 4.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 나. 투자운용인력 등 집합투자기구 업무 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 다. 다른 투자자와의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 라. 그 밖에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달리 정한 이해상충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관련 법규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상충 거래의 유형별 관리)**

- ①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유형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회사와 집합투자기구와의 거래 : 거래 금지
2.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거래제한. 다만,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집합투자 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기타 법적 요건을 갖춘 거래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 가능
3. 집합투자기구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거래 : 거래제한. 다만,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법상 부득이한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 가능
4. 회사와 계열회사와의 거래 : 거래제한. 다만,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거래가격의 적정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 가능
5. 회사와 임직원간의 거래 : 거래 제한, 다만, 회사에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준법감시인이 인정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 가능
6.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거래 : 거래 제한.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준법감시인의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 가능
  - 가. 이해상충의 최소화 조치
  - 나. 투자자에게 고지 및 설명

② 제1항 2호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회사의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관계투자중계업자, 관계투자매매업자, 관계신탁회사 등을 말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거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이해상충이 없고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

- ① 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준법감시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사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에 의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경영지원본부장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2.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나 또는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을 주관한다.
3.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개최는 각 업무담당자나 책임자로부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또는 준법감시인의 직권에 의하거나 기타 위원 등의 안건 인식 및 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4. 준법감시인은 해당 안건 사항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장은 안건 조사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자료제출 요청 또는 업무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준법감시인은 제4호에 의한 조사결과를 이해상충관리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추진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준법감시인은 제 5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전사적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이해상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 및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분리)** 회사는 전문사모 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 및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간의 이해상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무공간분리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 고유재산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은 벽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무공간을 각각 분리할 것
2. 전산시스템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가 각각 개별적인 전산시스템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전산시스템의 계정 구분 및 접근권한 설정 등을 통하여 운용관련시스템(운용관리시스템[OMS], 회계정보시스템, 운용지원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상호 접근을 차단할 것
3.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주문실행자"라 한다) : 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문요청을 처리하는 주문실행자를 지정할 것. 이 경우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문요청 이외에 주문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 이외의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접근
  - 나.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주문정보를 운용업자의 내부 및 외부(운용업자의 준법부서, 리스크관리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팀 등은 제외한다)로의 직·간접적 전달
  - 다. 회사가 지정한 주문실행자의 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조회이력 미관리
4. 임원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 및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부서의 임원이 각각 분리되어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5. 합동회의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부서,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간 합동회의는 금지할 것(다만, 투자의사결정 등이 수반되지 않는 회의로서 시장, 산업에 대한 분석회의는 가능).

## 부 칙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